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6. 13. 서영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6. 1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석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중 국가시

험에 합격한 자에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의 경우 가정분만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제2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호·제4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이 추가하는 조산사 임무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산전·산후 관리’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진찰·진단·검사 등 의료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산후조리업과 같이 신고 제도로 운영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와 같이 일정한 교육 수료만으로 할 수 있는 업역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어 직역 간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조산에 따른 검사, 처치’ 역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행 기준에 따

를 경우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이나 간호사 면허 취득 전 대학의 조산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1년간 의료현장에서 조산 수습과정을 거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임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1995년 이후 대부분의 분만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조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법상으로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밖에서 조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고 정상분만인 경우 주도적으로 출산을 진행할 수 있는바, 실제로도 조산사에 의한 가정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 중 조산사 임무의 정의에 산전·산후관리 추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조산사회가 실시하는 교육 이수 후 의료기관에서

실습과정을 거친 경우 추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